

# 정 관

#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

제정 2009. 9. 14. 정관 제 1호  
일부개정 2009. 12. 21 정관 제 2호  
일부개정 2010. 8. 26 정관 제 3호  
일부개정 2011. 12. 21 정관 제 4호  
일부개정 2013. 8. 12 정관 제 5호  
일부개정 2014. 12. 19 정관 제 6호  
전부개정 2015. 10. 16 정관 제 7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” 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 이라 한다)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·활동 지원사업
2.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
3.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
4.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·조사연구사업
5.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사업
6.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
7.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8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①재단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재단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2장 임직원

**제6조(임원의 구성)** ①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명
2. 대표이사 1명
3. 이사 20명 이내(이사장,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
4. 감사 2명

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**제7조(이사장)** 이사장은 정무부시장이 된다.

**제8조(대표이사)** ①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

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.

③대표이사는 직무수행 요건을 별표1과 같이 하고, 자격요건을 별표2와 같이 한다

**제9조(이사)**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사장
2. 대표이사
3.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

③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**제10조(감사)** ①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.

②당연직 감사는 시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, 선임직 감사는 공모 후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
2.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

**제11조(임원의 직무대행)**임원의 결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.

1. 이사장 : 시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대행
2. 대표이사 : 당연직 이사 중 업무소관 국장
3. 당연직 임원(공무원에 한함) : 소속기관의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차하급자

**제12조(이사의 대리인 선임)**①이사는 재단의 업무 및 이사회 심의·의결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대리인은 지명한 이사의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임기)** ①대표이사과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②대표이사과 선임직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임원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대표이사과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제3항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3년으로 하거나

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.

④당연직 이사·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**제14조(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운영)** ①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재단이사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.

**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**제16조(임원의 해임)**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
2.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

③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**제17조(임원의 의무와 책임)** 임원은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**제18조(임원의 보수)** ①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②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 사업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9조(조직)** 재단의 조직, 분장업무, 직원의 임면과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0조(직원의 채용)**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

**제21조(파견근무)** ①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대표이사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외 유관기관에 직원 파견 또는 파견요청을 할 수 있으며, 파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수행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요청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**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
## 제3장 이사회

**제23조(구성)** ①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
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4조(회의)**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 이사회는 연1회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
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
3. 제10조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③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25조(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
2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4.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

5.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

6. 상근임원의 채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

7.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
8.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10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
11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12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3.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14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6조(의결정족수 등)**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이사의 의결권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외에는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.

③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4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이사는 서면 의결사항을 소집절차에 의해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의결 제척사유)**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28조(회의록)**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위 원 회

**제29조(설치)**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내에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30조(구성 및 운영)** 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



로 정한다.

②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5장 재산 및 회계

**제31조(재산)**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
3. 사업 수익금,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4.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
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,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.

**제32조(재산의 관리)**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 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3조(재산의 평가)**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.

**제34조(기부금품)**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
② 1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부 터 3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35조(회계원칙)** 재단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36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37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한 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1.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
2.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
3.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

**제38조(사업의 대행)**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.

**제39조(사업실적 및 결산)**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
2.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
3. 사업계획과 사업실적
4.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
5.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

**제40조(잉여금의 처리)** 각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**제41조(감사의 실시)**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42조(정관의 변경)**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3조(해산)**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4조(잔여재산의 귀속 등)** ①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.  
② 시장은 귀속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등에 증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**제45조(공고의 방법)** 재단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**제46조(준용)**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, 같은 법 시행령」 및 「대전광역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47조(시행규정)** ①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  
② 재단의 규정 중 직제, 정원, 인사, 보수,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·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이전 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정관에 규정된 임기로 한다. 단, 제13조 제1항 후단의 “1년 단위로 연임”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기본재산) 기본재산은 “별지목록”과 같다.

<별표1>

## 직무수행요건 (직위명 : 대표이사)

### 1. 담당 직무

가. 법령·정관상의 담당직무

-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.(정관 제8조)

나. 대내·외적 관계 관련 업무

- 정부 및 지자체, 문화예술기관, 민간 기업, 시민단체, 이사회 등 대내·외적 업무

다.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

-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, 중·장기적 비전, 목표 등 설정, 사업진도 점검 및 독려, 성과에 따른 보상 등

라.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

- 개인별·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, 조직 역량 제고,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, 직원의 복지후생 등

### 2. 직무수행요건

- 기타 수행 능력요건

필요한 주요 능력	요구되는 능력 수준
① 개혁성	크게 요구
② 리더십	크게 요구
③ 기업가적 능력	크게 요구
④ 전문성	크게 요구
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	크게 요구
⑥ 비전 제시 능력	크게 요구
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	크게 요구
⑧ 청렴도	크게 요구
⑨ 도덕성	크게 요구
⑩ 준법성	크게 요구

- 학력 및 전공분야 : 제한 없음

- 경력 :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- 자격증 : 해당사항 없음

<별표2>

## <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요건 >

대전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채용되려면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.

1. 직무분야와 관련된 임직원 20인 이상의 기관·단체·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
2. 직무분야와 관련된 대학의 학과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4. 기타,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이사회(임원추천위원회)에서 인정하는 자

<별지>

## 기본재산 목록

(단위 : 원)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	비 고
현 금		11,533,000,000원	2009년 8,920,000,000원
			2010년 78,000,000원
			2011년 1,484,000,000원
			2012년 374,000,000원
			2013년 336,000,000원
			2014년 341,000,000원
토 지			
건 물			
계		11,533,000,000원	2014년 12월말 기준